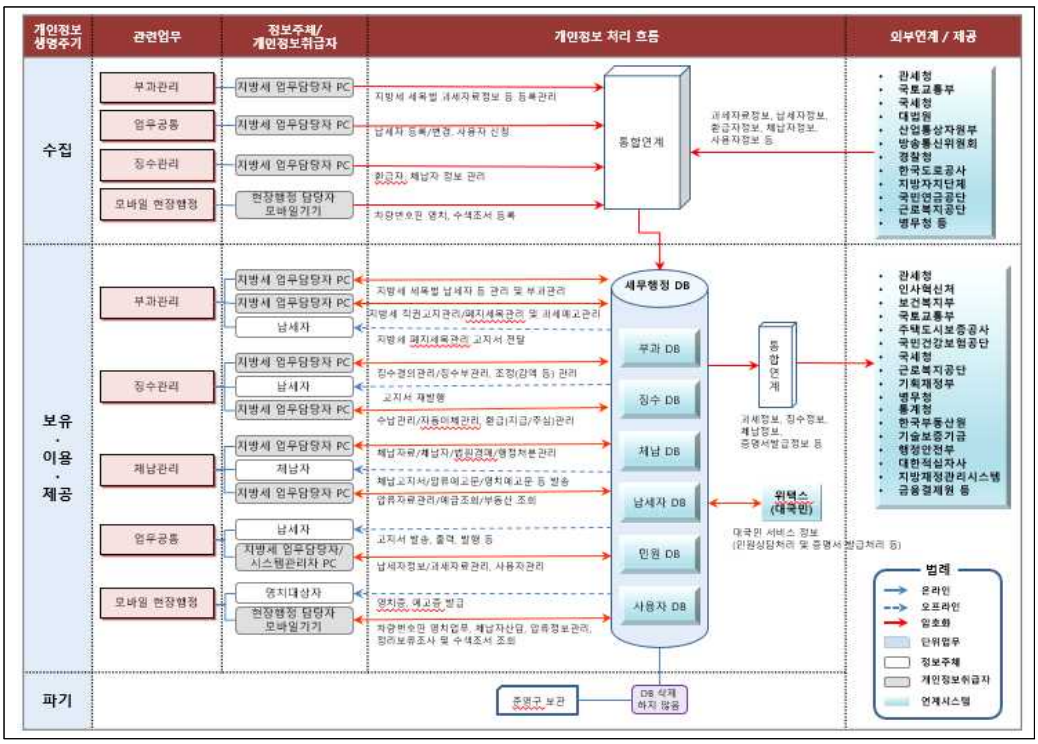
개인정보 영향평가서 요약본

<table>
<tr><td colspan="2">공공기관 명</td><td colspan="6">경기도</td></tr>
<tr><td colspan="2">평가기관</td><td>케이씨에이
컨소시엄</td><td>평가
기간</td><td>2026.04.01
~
2026.04.30</td><td>평가
예산</td><td colspan="2">☐ 1천만원 미만
☐ 1천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 3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1억원 이상</td></tr>
<tr><td rowspan="6">평가대상시스템 개요</td><td>시스템명</td><td colspan="3">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td><td colspan="2">시스템 구축 또는
변경 일정</td><td>2026. 1. ~
2026. 12</td></tr>
<tr><td>추진개요
및 목적</td><td colspan="6">•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뒷받침하는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신뢰받는 지방세정 실현을 위한 지능형 지방세 정보체계 구현”
• 첨단 정보기술 적용, 업무 프로세스 쇄신 등으로 ①맞춤형 납세편의, ②효율적 세입행정 ③지방세입 신뢰도 제고를 혁신적으로 달성
• 지방분권, 전국 고른 균형발전,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세외수입 행정 및 기술 환경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구현</td></tr>
<tr><td rowspan="4">추진성격</td><td>대상여부</td><td colspan="2">•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5만 명 이상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처리</td><td rowspan="2">추진예산</td><td rowspan="2">3,370,000천원
(VAT 별도)</td></tr>
<tr><td>추진주체</td><td colspan="2">행정안전부</td></tr>
<tr><td>추진근거</td><td colspan="2">지방세기본법 제135조(지방세 업무의 정보화)</td><td>추진유형</td><td>☐ 신규 구축
☐ 변경(고도화)
☑ 운영</td></tr>
<tr><td>신기술 유형</td><td colspan="4"></td></tr>
<tr><td>주요내용</td><td colspan="6">•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세 부과.징수.체납관리 등 세무 업무처리 지원
• 지방세 관계법 개정 등 외부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사용자 중심의 편의 기능 제공
• 지방세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속적인 성능 향상 필요</td></tr>
<tr><td>운용체계
변경내용</td><td colspan="6">해당하지 않음</td></tr>
</table>

	파일명	정보주체 수	개인정보 항목	제3자 제공	개인정보 처리 목적
개인정보파일개요	지방세 부과·징수 자료 조회·관리	20,615	이름, 생년월일, E-Mail, 집주소, 집 연락처, 핸드폰, 직장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직장명, 상호, 예금주명, 은행명,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차량번호, 차대번호, 차명, 신고자ID, 물건정보, 소유지분율, 증권보유좌수, 보유액, 예금금액, 보험금액, 임차금액, 주택/건물(건물명, 동, 호수, 용도, 형태, 면적 등), 물건지, 과세정보, 압류내역, 압류금액, 추심금액, 변제금액, 체납금액, 체납자 지분, 납부세액 등 증명서 발급정보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인사혁신처, 관세청, 국세청, 병무청, 대법원, 법원,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대한적십자사, 기술보증기금, 주택도시보증공사, 우정사업본부, 금융결제원, 금융정보분석원, 보험개발원, 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신용정보원,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여신금융협회, 시금고은행, PG사, 신용평가사	지방세 부과·징수 자료 조회·관리
개인정보 처리 흐름분석	1. 개인정보 처리 흐름 - 표준지방세시스템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인사혁신처, 관세청, 국세청 등과 통합연계시스템을 통해서 납세자정보, 소유자정보, 체납자정보, 압류대상자정보, 사용자정보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유 및 이용함. - 경기도 지방세 업무담당자는 지방세에 대한 부과/징수/체납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DB에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 - 표준지방세 관련 개인정보의 보존기간이 준영구로 DB에서 삭제하지 않음 2. 총괄 개인정보 흐름도				



영향평가기준	평가기준 변경사항 및 사유	-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제2025-7호, 2025.9.5.,일부개정) 제10조(평가영역 및 평가분야), 제11조(평가항목)에 의거한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법령 개정 및 대상 시스템의 특성에 따른 평가항목을 가감하여 평가 항목으로 구성함 -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은 국가표준보급시스템으로, 행정안전부에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한('22.3) 평가항목은 본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단, 행정안전부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평가지표" 에서 제시한 "자치단체 점검내용"을 포함하여 평가함.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조치(3장)의 13개 항목 . 대상시스템의 기술적 보호조치(4장)의 16개 항목 - 특정 IT 기술 활용 시 개인정보보호(5장)은 평가 대상시스템과 해당 사항이 없어 본 평가대상에서 제외함(7개 평가분야 37개 항목)
	주요 평가기준	- 2025년 10월 2일에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령"을 반영 - 2025년 10월 31일에 시행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반영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2025년 10월 개정) 준용 - 본 평가기관 영향평가 수행방법론 및 대상시스템 특성에 따른 평가지표 가감
평가기준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평가		**1.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 준수 여부에 대한 분석평가** - 대상시스템의 개인정보 파일은『지방세법』제49조, 제130조,『지방세기본법』제135조,『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95조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고,『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관련 기관에 제공하고 있음 **2. 개인정보 처리,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관리 및 기술적 조치 사항에 따른 분석평가** -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 보유기간은 지방세기본법 등 법령 기준 및 보유목적에 부합된 기간(준영구)으로 산정하여 보유하고 있음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법령 등에 따라 적법하게 제공하고 있음 -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준영구로 산정되어 개인정보에 대해 파기는 하고 있지 않음
위험요인에대한개선조치	주요 위험요소에 따른 개선조치 방안	- 개인정보파일 대장 현행화(2.2.1) : 경기도 개인정보파일 대장 현황(2025.08.03.)의 세외수입 부과/수납/체납/압류 관리"에 오기되거나 누락된 내용 현행화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등록된 개인정보파일의 변경 등록(2.2.2)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등록되어 있는 개인정보파일(세외수입 부과/수납/체납/압류 관리)에 오기되거나 누락된 내용 변경 등록 - 개인정보 처리방침 내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현황 현행화(3.4.1)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8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의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현황"을 2026년 위탁 내용으로 현행화하여 안내 -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계정 발급 시 개인정보 보호 교육 실시(4.1.2) :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의 사용자등록 신청 시 별도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 실시 또는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과 동일하게 팝업을 통한 개인정보보호 교육 기능 적용 - 접근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 내역의 주기적 점검(4.1.10) : 내부 관리계획에 명시된 바와 같이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부여, 변경 또는 말소한 내역을 반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점검

위험요인에대한개선조치	주요 위험요소에 따른 개선조치 방안	- 개인정보취급자 PC에 개인정보 다운로드 시 암호화 기능 적용(4.3.2) :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포함)를 개인정보취급자의 PC에 다운로드 시 암호화 기능(ZIP 암호화 등) 적용 - 출력·복사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보호조치 적용(4.8.3) :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종이 인쇄물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출력·복사물에 출력자, 출력일시 표시 등 출력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보호조치 적용
	위험요소에 따른 정보주체 인지사항	해당없음
평가결과		• 1장 대상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영역은 총 10개 항목 중 이행 9건, 해당없음 1건으로 평가되어 이행률은 100%로 확인되었음. • 2장 대상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영역은 총 7개 항목 중 이행 4건, 부분이행 2건, 해당없음 1건으로 평가되어 이행률은 83%로 확인되었음. - 개인정보 취급자 관리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양호한 상태로 평가함. 그러나 개인정보 파일 관리는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됨. • 3장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조치 영역은 총 17개 항목 중 이행 14건, 부분이행 1건, 해당없음 2건으로 평가되어 이행률은 97%로 확인되었음. - 수집, 보유 및 이용·제공, 파기는 양호한 상태로 평가함. 그러나 위탁은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됨. • 4장 대상시스템의 기술적 보호조치 영역은 총 27개 항목 중 이행 17건, 부분이행 4건, 해당없음 6건으로 평가되어 이행률은 90%로 확인되었음. - 접근통제, 개인정보의 암호화,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악성 프로그램 등 방지, 물리적 접근 방지, 개인정보의 파기, 개인정보 처리구역 보호조치는 양호한 상태로 평가됨. 그러나 접근권한 관리, 개인정보의 암호화, 기타 기술적 보호조치는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됨. • 추가적으로 경기도는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1개의 개인정보파일 대장을 작성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등록하고 있으나, 행정안전부의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개인정보파일 표준목록에 따르면 19개의 개인정보파일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향후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파일 표준목록 제공 시, 개인정보파일 표준목록에 따라 개인정보파일 대장을 작성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등록할 것을 권고함.